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학생자치생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전주근영여자고등학교 학생자치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적용근거 및 목적]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8조의 제1항, 제17조, 제18조의 4, 제2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1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학교구성원의 인권을 보장하고 학생자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교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교사의 권한과 학생의 인권이 서로 존중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교육 공동체 구성원이 스스로 만들고 실천하는 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규칙 규제 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3조[학생의 인권보장 원칙] ①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의 인권은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보장한다.

③ 학생의 인권은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벼이 여기지 않는다.

④ 학칙과 학교생활규정은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제4조[학교구성원의 책임과 역할] ① 학교의 장, 교직원,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며 교사와 다른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학생에게 학기당 2시간 이상, 교직원과 학부모에게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한다.

제2장 학생의 권리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자유가 아니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일방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교육과정에 없는 교내·외 행사 참석을 학생에게 강요하지 않는다.

③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④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와 제91조 제1항에 근거하여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가 있다.

② 학교는 학생에게 보충수업이나 방과후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지 않으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③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한다.

제7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는다.

②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 이탈 학생,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교부적응 학생 등을 포함한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③ 학교는 차별을 받아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8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에 관한 권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 지역주민과 협력한다.

제10조[휴식을 취할 권리]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몸과 마음의 발달을 위해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가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식을 보장하며 정규교과 시간 외의 활동을 강요하지 않는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11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가 있다.

② 교복(춘추복·하복·동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 개인이 계절별 특성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③ 방한용 덧옷 등의 착용 여부와, 색상·형태 등은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제12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하지 않는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보관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긴급한 때로 최소화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검사를 하지 않는다.

②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알기 쉽게 표시한다.

③ 학교는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개인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지 않는다.

제13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① 학생은 가족, 친구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를 달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학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④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때는 이를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된다.

제14조[정보에 관한 권리]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학생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 등의 정보를 공개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이 정확하지 않거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거나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으면 고치거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5조[양심·종교의 자유]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지 않는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 과목 없는 특정 종교 과목 수강을 강요하지 않는다.

제16조[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가 있다.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가 있다.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가 있다.

④ 학생은 모임이나 단체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⑤ 학교의 장은 교지를 포함한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 누리집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을 지원한다.

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교는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 활동을 보장한다.

② 학교는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학생회 예산으로 편성하고 학생회가 예산을 운영하며, 담당교사를 통해 개선급으로 집행할 수 있다.

- ③ 학교는 성적, 징계 등을 이유로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권리와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
- ④ 학생은 자유롭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⑤ 동아리는 학술제, 예술제, 축제 등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 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한다.

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 ② 학생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0조[건강에 관한 권리]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필요한 치료를 받고, 보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생리로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충분한 보건시설과 쾌적한 환경(냉난방, 미세먼지 제거 등)을 확보하고 유지한다.

제21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해 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의 청구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제3장 학생생활

제22조[기본행동]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켜 자율적이고 자치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① 학교구성원 모두는 서로를 존중한다.
- ②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③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④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글, 상징 등을 포함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 ⑥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⑦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한다.

제23조[교내생활 일반]

- ① 등교는 교실 입실 기준 8시 20분까지 하고(이후 등교는 '지각' 처리됨), 미인정 외출·지각·조퇴·결과가 없도록 한다.
- ② 학교 출입은 반드시 정문으로 한다.
- ③ 외출·지각·조퇴 등의 사유를 담임 선생님께 신고한다.
- ④ 등교하면 교내에서는 규정된 명찰과 학생증을 패용한다.
- ⑤ 수업 시종시간을 엄수하고, 수업시간에 학습태도를 바르게 한다.(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 시작 후 5분 이후에 입실하면 '결과' 처리됨)
- ⑥ 결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사후)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담임 선생님의 허가를 받는다.
- ⑦ 몸이 불편하여 보건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임 선생님(교과담당 선생님), 보건 선생님의 허가를 얻어 이용한다.(위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한다)
- ⑧ 자기주도학습 시간에는 이동하지 않고 정숙을 유지하며, 자기계발에 노력한다.
- ⑨ 이동수업 시 교실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학교에서의 개인 사물의 보관은 개인이 책임져야 하며, 귀중품은 담임 선생님에게 보관할 수 있음.)
- ⑩ 점심시간 급식 시간은 협의에 따라 학년별로 달리하여 급식 질서 및 개인 위생을 준수한다.

제24조[수업 태도] ①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 ② 수업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교사의 허락 없이 해당 과목 이외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 ⑤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 ⑥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사에게 허락을 받는다.

제25조[휴식시간과 여가활동] ① 학교의 장,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을 보장한다.

- ② 휴식시간(식사시간 포함)에 다른 사람의 휴식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여가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의 특별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규칙을 지킨다.
- ④ 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 ⑤ 점심시간은 12:30~13:50이며, 이에 포함되어 있는 학급별 독서활동 및 자율동아리 활동 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⑥ 여가시간에는 특별실(교과교실, 전산실, 음악실, 미술실, 종림관, 도서관 등)을 이용하며,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⑦ 타인의 활동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26조[용모] ① 학교는 학생의 두발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를 제한하지 않는다.

- ② 학생은 교복 착용 시기, 치마나 바지 착용 등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 ③ 학생은 교복 착용 등교를 원칙으로 하며, 임의로 교복을 수선하거나, 체육복 등교는 불허한다.

제27조[시설이용과 환경] ①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 ② 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 이용은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얻는다.
- ③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한다.
- ④ 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분리수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 ⑤ 각종 게시판 이용 부착물은 생활안전교육부의 사전 허가를 득한 후 부착한다.

제28조[개인 소유물] ① 다른 학생과 교사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못 쓰게 만들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29조[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현장체험학습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특별히 허락한 물품은 예외로 한다.

1. 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5. 인권침해 또는 폭력 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6. 음란한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나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항정신성 약물
8. 차량이나 오토바이
9. 기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유해 매체물·약물·물건 등

제30조[소지품 검사] ① 학생과 교직원을 해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하고, 그것을 사용할 위험이 있을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가 가능한 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29조 제1항이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화재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2. 제29조 제7항이 예시한 도구를 소지하고, 본인 또는 다른 사람과 흡입(음용)할 수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경우
- ③ 소지품을 검사할 때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하여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간결하고 신속하게 한다.

④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 후 협의하여 대처하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는 먼저 대처하고 나중에 학교의 장에게 보고한다.

제31조[학생 개인물품 관리] ① 제29조와 제30조와 관련하여 학생 또는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현행법상 청소년이 소지하는 것이 부적절한 물품은 학교가 보관하며, 즉시 학생의 보호자에게 연락하여 학교가 보관하고 있음을 알린다.

② 학교가 보관하고 있는 학생의 물품은 5일 이내에 보호자와 상담한 후 즉시 보호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을 교육활동 시간에 부적절하게 사용한 경우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사가 보관할 수 있다.

제32조[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익명을 활용할 수도 있다.

가. (해당)학생의 보호자,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생활안전교육부장 및 학교전담경찰관

나.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다. 학교폭력신고·상담전화(전라북도 교육청 254-1025)

라.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전주교육청 1588-7179(친한친구)), 1588-9128

마. 여성긴급전화 1366

바. 청소년긴급전화 1388(273-1412)

사. 경찰청 범죄신고 112 또는 117 등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하여 보호를 받는다.

④ 학교 폭력에 관련된 사항은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3조[전자기기 사용] ① 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 행사, 체험활동 등 교육활동에서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해 교사가 허락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③ 교사는 교육활동 시간에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게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학생이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교사가 주의를 줄 수 있으며, 학생이 주의를 3회 받으면 정규 교육활동 시간에 한해 5일 이내에서 해당 전자기기를 보관 조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보관 조치가 3회 이상일 때 또는 학생이 전자기기 제출을 거부했을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고사(시험)기간 동안 전자기기는 등교할 때 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고사(시험) 중 전자기기를 지니고 있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제34조[정보통신 윤리] ① 사이버 공간에서 바른 말을 사용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④ 다른 사람의 정보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제35조[동아리활동] 방과 후 교육활동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고,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은 동아리(정규, 자율)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② 동아리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교육과정운영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③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④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⑤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⑥ 자율동아리 등록은 매 학기 초 이루어지며,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활동할 수 있음. 활동기간은 등록 시점부터 학기 말까지이며, 학기 말에는 활동보고서를 담당 교사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6조[체벌금지] 학교에서 체벌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금지하며, 특히 금지하는 체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도구를 이용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를 사용하는 체벌
3. 반복적, 지속적 신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 폭력

제37조[교사의 권한]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적 상담과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행동개선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와 의견 제출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신청

제38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① 교사는 학생과 상담하여 먼저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한다.

- ② 교사는 학생의 바람직한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또는 방과 후 교육
4. 망가진 시설, 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요구
5. 학부모 통보와 상담
6. 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 ③ 교사가 상담과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변화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학교 안팎에서 다른 사람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때, 학생의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40조[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할 수 있다.

- ① 교칙에 의거한 출석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 가.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나.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경연대회·현장실습·훈련 참가, 교환학습·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
 - 마.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 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④ 소정의 등교시간(교실 입실기준 08:20)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 ⑤ 소정의 하교시간(16:40)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 ⑥ 소정의 교과수업시간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공적 사유 없이 수업 시작 후 5분 이후에 입실하였을 경우에도)에는 결과로 처리한다.
- ⑦ 위 제③항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⑧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⑨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 ⑩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각 횟수를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41조[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구분	대상	일수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양	○ 학생 본인	20
사망	○ 부모 및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①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연속된 결석일수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함.
- ② 입양 이외의 경조사 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다.
- ③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와 생리통으로 인해 수업 출석이 어려운 학생은 병원의 소견서를 통한 보건교사의 확인 후 학교장의 허가로 출석을 인정한다.

제42조[출석사항 평가] 출석사항의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전무한 경우 개근으로 한다.
2. 3년간 결석 3일 이내인 경우 또는 지각, 조퇴, 결과를 합하여 9회 미만인 경우 정근으로 한다.

제43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병결석
 - 가.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학부모 의견서, 투약봉지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예: 상습적이지 않은 1일 또는 2일의 단기 결석의 경우)
2. 미인정 결석
 -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 기관에 연행되어 범법 행위가 인정된 경우 및 도피 등)
 - 나.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1과 3의 각 항과 같은 사유가 아닌 결석
 - 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 제5항의 가정학습 기간
3. 기타 결석
 - 가.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나. 공납금 미납의 사유로 결석한 경우
 - 다.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4. 당해 학년 동안에 출석한 일수가 출석할 일수의 2/3에 미달인 경우에는 진급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출석일수라 함은 조회, 종례, 자율활동, 창의적 체험활동, 특별활동 및 행사를 포함한다.

제4장 학생생활지도 및 시장

제1절 생활지도

제44조【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3. 매월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지진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하교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6. 각급 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7. 학생은 제 7대 안전사고예방 51차시 안전교육을 의무 이수한다.
 <적응활동> 계획에 따라 편성된 생활안전, 교통안전, 폭력 및 신변안전, 약물사이버증독, 재난안전, 직업안전, 응급처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제45조【진로지도】 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1. 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진학정보실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3.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6.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46조【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47조【벌의 종류】 생활지도의 하나로 학생에게 벌을 줄 경우, 학생에게 주는 지벌(知罰)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덕벌(德罰)을 줄 수 있다.(제5장 참조)

제48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2절 회복적 성찰제

제49조【목적】 학생자치문화 정착을 위한 ‘회복적 성찰제’는 기존의 상·벌점제가 가지는 목적 지향적 행위 유도, 피동적 생활규정 준수 등의 반인성·반인권적 요소를 제거하여, 학생이 공동체를 위해 자율적으로 규칙을 준수하고, 학교 공동체 전체에 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일정 기간 회복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여 인식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데 있다.

제50조【운영방법】

1. ‘학생자치생활규정’위반 학생은 생활안전교육부 지도교사로부터 ‘회복적 성찰문’을 받고, 주어진 5일 동안 하루하루의 질문지에 성실한 성찰의 답변을 기재하여, 담임 선생님의 확인 도장을 받고, 아울러 생활안전교육부 지도교사의 확인도 받는다.
2. 최종 5일째가 되는 날은 ‘회복적 성찰문’을 생활안전교육부장에게 제출한다.
3. 생활안전교육부는 ‘회복적 성찰문’ 발급 현황을 누가 기록 관리한다.

제51조【적용방법】

1. ‘회복적 성찰문’을 받은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2. ‘회복적 성찰문’을 3회 이상 받은 학생은 선행상, 모범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
3. ‘회복적 성찰문’을 받고 최종 5일째 제출하지 않거나, 5일 동안 하루하루 확인을 받지 않고 누적된 학생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교육처분>(이하 내용 동일) 대상자가 되며, <교육처분>은 교내봉사 5일이고, 그 시간은 07:30~08:20까지임.
4. <교육처분>을 받은 학생은 실·부실장, 학생자치부원 및 학생회장·부회장에 입후보 자격을 상실한다. 아울러 실·부실장, 학생자치부원 및 학생회장·부회장에 임명 및 당선 후에도 <교육처분>을 받게 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5. 실·부실장, 학생자치부원의 재임명은 담임교사 및 생활안전교육부 추천에 의해 임명하며, 학생회장·부회장 재선거 방식은 간접선거로 한다.
6. 각종 표창 추천대상에서도 제외된다. <교육처분> 사실은 당해 연도에만 적용된다.

제52조 [기대효과] 학생으로 하여금 충분한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고,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학생자치생활규정을 준수하도록 한 교육적 방식이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음.

제53조[별점 항목]

삭제(2017.1.1. 일부)

제54조[교육처분]

‘학생자치생활규정’ 위반으로 ‘회복적 성찰문’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제51조 3항 관련.)

제3절 시상

제55조 [종류] 본 규정은 별도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본교 학생의 시상은 내용에 따라 학년협의회 또는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수여한다. 단, 특별상은 예외로 한다.

1. 학력부문 – 학력우수상, 예체능상, 교과 우수상 등
2. 모범부문 – 선행상, 모범상 등
3. 근면부문 – 3년 개근상, 3년 정근상
4. 특별상 – 교내·외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여한다.

제56조 [시기] 시상의 시기는 졸업식, 학기말, 기타 교내 행사나 학교 운영상 필요한 시기에 수여한다.

제57조 [외부로부터의 시상 또는 표창] 특정한 공로로 외부에서 주는 상을 제외하고는 학교장의 추천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사전회의를 거치지 않고 관계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학교장에 추천을 상신한다.

제58조 [학력부문]

1. 학력우수상(종합) : ① 교과 평가에서 6학기 교과 총점의 합이 5% 이내인 학생 (졸업 시 시상)
② 결석(미인정결)일수 3일 이내인 학생
③ 학교의 징계 처벌을 받지 아니한 학생
2. 교과학력우수상 : 교과별 석차 4% 이내의 학생(동석차 포함)(체육, 미술, 음악교과 제외)으로 학기별로 표창한다.
3. 이사장상 : 6학기(졸업 시 시상) 교과성적 총점 종합 최고 득점학생(단, 계열별 과목수가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과목수로 환산한 총점 순으로 한다.)이며 모범적인 학생.
4. 학교장상 : 6학기(졸업 시 시상) 교과 성적 총점 종합 최고 차점 득점학생이며 모범적인 학생.
5. 예체능상 : 6학기(졸업 시 시상) 음악, 미술, 무용, 체육, 문예 등 대외적으로 도단위 이상 각종 대회에서 입상한 자로 지도 교사의 추천을 받은 학생.
6. 가능상 : [삭제:2020.4.6.]

제59조[모범부문] 모범부문의 시상은 교육처분(교내봉사활동) 이상의 징계 사실이 없는 자에게 수여 한다.

1. 선행상 : 가. 선행 사실이 두드러지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
나. 습득률 신고, 인명 구조 등 특별한 선행을 한 자.
다. 3년 간 1회 만을 수여토록 함.(학기당 , 학급당 2명)
2. 효행상 : [삭제:2020.4.6.]
3. 모범상 : 학생회 임원, 학급 실장이나 방송 업무 담당자, 편집부원, 도서부원으로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어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4. 봉사상 : 봉사한 사실이 현저한 자

제60조[근면부문] 개근 및 정근상의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전입생이나 복학생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1. 3개년 개근상 : 3년 간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1회도 없는 자
2. 1개년 개근상 : [삭제:2020.4.6.]
3. 3개년 정근상 : 3년 간 결석 일수가 3일 이내에 해당한 자
4. 1개년 정근상 : [삭제:2020.4.6.]

제61조 [외래모범상][삭제:2020.4.6.]

제5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와 징계

(단, 고사 부정행위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제62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학생의 생활교육과 징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교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교육 업무담당자, 학생상담 업무담당자, 교무기획 업무담당자, 각 학년 업무담당자, 학부모 대표 등을 위원으로 하되, 인성인권 업무담당자를 간사로 한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담당교사나 담임교사에게 사안의 설명과 의견을 듣고,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3조[징계 원칙]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②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교육에 중점을 둔다.
- ③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행동과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다.

제64조 [징계사항범위] 징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교폭력 사안은 별도로 학교장자체해결제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다룬다.
(단, 학교장자체해결제에서 ‘학교폭력 아님’으로 결정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다.)
2. 교내 및 교외에서 흡연·음주 등 학생으로서의 품위 및 학교의 위신을 해하는 행위.
3. 학생자치생활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했을 경우
4. 학생자치생활규정 위반 시 개전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위반할 경우

제65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에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① ‘주의’(교육처분)는 즉시 또는 별도 시간에 선도교육을 한다.-‘회복적 성찰문’ 미제출 관련
- ② 학교 내 봉사: 7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시간은 07:30~08:20분으로 함.
- ③ 사회봉사: 5일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④ 특별교육이수: 3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⑤ 출석정지: 1회 10일 이내, 연간 30 일 이내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⑥ 퇴학처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행할 수 있다.

1. 학칙을 위반하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학생
2. 결석이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한 학생
3. 기타 학칙을 위반한 학생

⑦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교육,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않고 학생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66조[징계 방법] ① “주의” 및 “학교 내 봉사”는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수업 전후, 점심시간 등) 실시한다.

-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대상 학생이 위탁기관에 불참 또는 이탈한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는 교육감이 설치 운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과정을 이용하거나 교육감이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한다.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 처리하고 가중 처벌한다.
- ④ “출석정지”는 출석정지 처분기간(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 조치 포함)을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 ⑤ 퇴학처분: 퇴학처분을 할 때는 다음 사항에 따른다.

1.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하기 전에 일정 기간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는 당해 학생,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해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사회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학업중단 의사가 있는 학생에게 반드시 학업중단숙려제를 안내해야 한다.

⑥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이수는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하며, 학교나 해당 기관의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학교 내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67조[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 징계 종류별 부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의’ 및 ‘학교 내 봉사’

1. 학교환경 정리활동
2. 교내도서관 도서, 교재, 교구 정비
3.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등

② 사회봉사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③ 특별교육이수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학생교육 관련 학부모 상담 근거 기록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 치료학교 등의 교육 이수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은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교육,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교육 이수
4.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5. 상담 자원봉사자,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실 등과 연계하여 일대일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④ 출석정지

1. 학교는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 운영하고, 이에 따른 교원 및 시설·설비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출석정지로 보호자 요청에 따른 가정학습 기간 동안 학부모와 동반한 사회봉사 20시간 이상 이수한 증명서(실사 확인)와 가정학습 특별교육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제출하면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다.

제68조[징계통보와 진술권 보장]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과 해

- 당 학생의 학교생활, 품성, 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에게 듣는다.
-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69조[심의 확정과 재심 요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징계 여부와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징계 여부와 종류를 결정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징계 결과가 통보된 후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70조[징계 경감과 해제] ① 학교의 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해당 학생이 문제 행동을 고칠 의지가 뚜렷하다고 인정될 때는 처벌의 경감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고사(시험)에 응시하되, 시험 참여 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장 규정의 개정

제71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본 규정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 ①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교육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의 투표로 선출한다. 학생 위원은 전체의 40%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와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 사람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교사회의 의결
3. 학부모회의 의결
4. 학생회의 의결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에 따른 학교장 발의

제73조[문헌조사와 의견수렴] ① 위원회는 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문헌조사와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74조[심의와 결정] ① 위원회는 학생생활규정개정안을 발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제75조[연수와 교육] 개정한 학생생활규정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또는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홈페이지와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

제7장 학생회(요약규정)

제76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또는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되며, 또한 징계 처분을 받은 때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제77조[권리 및 의무] ①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② 학생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 등을 제공 받을 권리를 갖는다.
- ③ 학생회는 자치권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 ④ 학교 운영, 학교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갖는다.
- ⑤ 학교의 운영 및 전라북도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 ⑥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 ⑦ 회원은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78조[기구 및 조직] 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 및 조직을 둘 수 있다.

- ① 학생총회
- ② 대의원회
- ③ 집행위원회
- ④ 학급학생회
- ⑤ 선거관리위원회
- ⑥ 학생지도위원회(운영 지도를 위해 교직원으로 구성)

제79조[협의·지원사항] 1. 학교생활(교과 활동, 학교행사, 학생 간 갈등 및 분쟁, 교육환경, 학생복지, 기타) 전반에 관한 학생 의견의 수렴 및 건의 활동

2. 학생 중심의 학교 전통 고양 및 자발적인 연구, 예술, 체육, 취미, 봉사 활동
3. 학교에 대한 건의를 위한 의견 수렴 및 전달
4.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무회의에 상정된 학생의 인권·복지·생활 관련 안건에 대한 협의 및 의견 제출
5. 학생회 운영
6. 학생복지와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7. 학교장 요청 사항에 대한 협의
8.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시 방제 및 지원활동
9. 기타 학생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

제80조[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존중 받는다.

제81조[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장단(학생회장, 부회장2명), 부장단 및 차장단-14명)
2. 학생자치부

제82조[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이하 내용 제85조【집행위원회】 참조

제83조 [직무 및 선출]

1.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회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다. 각 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2.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가.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각 부서의 장은 회장이 학교장에게 지명 보고한다.
 - 나. 회장 및 부회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출석 현황이 출석률 90%이상이며, 교육처분(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 자로 한다. 기타 학생회 규정

에 준한다.

- 다. 각 부서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84조 [대의원회] ① 학생회의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 ② 대의원회(최고의결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학생회장단(학생회장, 부회장2명), 부장단 및 차장단-14명)
2. 학생자치부
2. 각 학급 실·부실장

- ③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

- ④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의 사업계획·사업보고 심의 및 승인
2. 예·결산 심의 및 승인
3. 교육정책 제안 사항 심의
4.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 처리
5. 집행위원회의 각 부서 부장 및 차장 임명 동의안 인준
6. 학생회규정 및 선거관리규정의 제·개정안 심의·의결
7. 기타 운영 전반에 관한 중요 사항 토의

- ⑤ 대의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의원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2. 정기회는 월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대의원 1/5 이상 또는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여길 때 이를 소집한다.
3. 대의원회의에서 일반 안건에 대한 의결은 재적의원 1/2이상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4. 학생회 업무담당교사는 학교 상황에 대한 설명 및 답변을 하거나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학교에 전달한다.
5.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의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85조 [집행위원회] ① 학생회 운영기구로 집행위원회를 둔다.

- ② 집행위원회의 구성은 학생회장, 부회장 및 각 부의 부·차장으로 한다.

- ③ 집행위원회는 상시적인 의결기구이며 운영기구이다.

- ④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

1. 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2. 학예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3. 기획부 : 학생회 사업 전반에 걸친 기획 업무 및 문서 정리, 연간 행사 계획표 작성
4. 교육홍보부 : 대외 협력 및 교류, 홍보물 발간, 신입생 홍보, 홈페이지 관리
5. 학생복지부 : 학생 주최 수의 사업 및 봉사, 학생 인권 및 복지 사업 총괄
6. 자치활동부 : 학생자치활동 전반,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활동 및 규제, 학생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심신단련 및 운동에 관한 업무 총괄
7. 생활안전부 : 학생자치 안전교육 제반 업무 총괄

- ⑤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계획(안) 작성
3. 예산편성 요구 및 결산 보고
4.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5. 선거관리 업무
5. 기타

- ⑥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2. 학생회 업무담당교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학교 현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제86조 【예산편성】 ① 학생회의 예산은 학교에서 지원한 예산과 후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편성한다.

② 학교는 학생자치활동 보장을 위해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을 필수적으로 편성하고, 학생자치 담당교사에게 개산급 지급을 통해 예산을 운영한다.

③ 집행위원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후 10일 이내에 예산안을 편성하여 대의원회에 제출하고, 대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87조 【결산】

1. 학생회의 회계연도는 학생회 정·부회장 당선 확정 다음날부터 차기 정·부회장 당선 확정일까지로 한다.

2. 회장은 회계 연도 만료 후 1개월 이내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 심의 및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8조 【회칙 개정】 학생회 규정의 제·개정은 대의원 1/3 이상의 찬성 또는 집행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3/4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규정이 명시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에 논란이 있는 사항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3조【시행일】이 규정은 2002년 10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이 규정은 2004년 6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이 규정은 2004년 9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이 규정은 2005년 3 월 21 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시행일】이 규정은 2009년 3 월 23 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시행일】이 규정은 2011년 4 월 11 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시행일】이 규정은 2012년 10 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4 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3 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시행일】이 규정은 2021년 3 월 2일부터 시행한다.